

# 199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회 부 경 위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2 .17. 평창군수(재무과장)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12. .

다. 상 정 일 자 : 1999.12.20 제73회평창군의회(정기회)제3차 본회의

### 2. 제 안 이 유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 199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함.

### 3. 주 요 내 용

-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변경안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대화체육공원 부지 2필지 2,482㎡, 봉평궁도장 부지 2필지, 9,113㎡등 관계계획에 미반영되었던 토지매입 2건 11,595㎡를 반영하고자 하며,

대화체육공원 편입토지중 소유자가 교환을 요구하는 대화리 407-2번지 1,160㎡를 취득하고 하안미리 1603-7번지의 1필지 2,320㎡를 처분하는 교환 1건임.

### 3. 검 토 결 과

- 199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은 취득2건

교환1건 총 3건으로서 이중 취득재산 토지는 대화체육공원  
조성에 필요한 부지 2,482㎡과 봉평궁도장 부지 9,113㎡  
등 총 11,595㎡이며, 교환은 대화체육공원 편입부지 소유자  
의 요구에 따라 균유지 하안미 1603-7번지의 1필지2,320㎡  
와 편입부지 407-2번지 1,160㎡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
매입예산은 금년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사업추진에 따른  
부지매입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별문제점이 없다고  
판단됩니다.